

구미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안번호	
------	--

제출일자	2004. 11. .
제 출 자	구 미 시 장

1. 제안사유

구미 도시계획시설인 시설녹지로 결정되어 있어 수십년간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구미 I.C 주변 시설녹지(완충녹지)를 폐지하여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을 해소함과 동시에 구미 관문지역의 이상적인 개발을 도모코자 미관지구 지정을 통한 제1종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금회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을 입안 하였기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2. 구미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의 주요내용

☐ 일반미관지구 결정(신설)

- 신평 1미관지구 : $34,000m^2$ (신평·원평동 일원)
- 신평 2미관지구 : $34,410m^2$ (신평동 일원)
- 신평·광평미관지구 : $134,830m^2$ (신평,광평동 일원)
- 광평 1미관지구 : $12,640m^2$ (광평동 일원)
- 광평 2미관지구 : $57,860m^2$ (광평동 일원)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신설)

-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 $307,470m^2$ (시설녹지 해제구역 전체)

3. 붙임 : 도시계획결정(안) 도면 1 부

□ 도시계획시설 결정 도면



○ 토지이용계획(안)도

